



대구대학교 - 경산시자전거연맹
산악자전거 대회 추진 및 공동프로젝트
수행을 위한 양해각서



대구대학교와 경산시자전거연맹(이하 "당사자"라 함)은 당사자 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,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 1 조 (목적)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상호주의에 의거 당사자 상호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하는데 있다.

제 2 조 (교류 협력 취지) 산악자전거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자전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참여 가능한 자전거 문화축제 시설 창출과 사업 도모

제 3 조 (교류 협력 분야) 본 양해각서에 대한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.

1. 산악자전거 대회 활성화와 관련된 기술과 경험제공에 관한 사항
2. 상호 노하우(Know-how)의 접목과 컨소시엄(Consortium)을 활용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지원 사업 유치 및 연계 극대화
3. 산악자전거 대회 추진에 관련한 공동 마케팅 수행에 관한 사항
4. 기타 상호 교류 협력 가능 분야 발굴 등

제 4 조 (교류 협력 내용)

1. 산악자전거 대회 추진 시 시설 허가·사용에 대한 이행권한 부여
가. 대회기간: 대회개최일 전·후 1개월(한 달)
나. 대회 외 기간: 대학교육,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구대학교와 협의 후 이용
다. 산악자전거 대회 시설 유지 및 노면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주최 측(경산시자전거연맹)에서 지원하되,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상호 협의한 바에 따른다.
라. 대학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
2. 대구대학교의 유희 부지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
3. 자전거 교육 장소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민의 건강한 삶 추구

제 5 조 (보 안)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비밀정보, 문서는 당사자 간에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 외부누출을 엄격히 제한한다.

제 6 조 (효력발생, 개정 및 종료)

1.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타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폐기결정을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.
2. 본 양해각서의 개정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.
3. 본 양해각서의 효력종료는 본 양해각서에 의해 합의되며, 추진 중인 사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4. 제5조에 명시한 보안에 관한 의무는 본 양해각서의 효력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.

제 7 조 (연락 및 협조)

1. 연락 및 협조부서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장과 경산시 자전거연맹 전무이사로 한다.
2. 관련사안 발생 시 당사자 간 필요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본 양해각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 기관은 각각의 역할 및 협력사항을 성실이 이행하기로 하며, 업무협약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서명(날인)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12월 12일

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
단장 윤재응

윤재응



경산시자전거연맹
회장 서기완

서기완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대구대학교
사무처장 나태영

나태영